

## 산업표준화 법규개정 주요내용

공업진흥청에서는 지난 '92년 12월 공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요강을 '93년 6월에 개정 하였기에 본지에서는 그 주요 개정내용을 게재하오니 업계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 〈개정경위〉

- '92. 12. 8 공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개정(법률 제4528호)
- '93. 6. 9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3907호)
- '93. 6. 18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상공자원부령 제8호)
- '93. 6. 21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개정(공진청고시 제93-225호)

### 〈개정목적〉

중전 공업표준화법은 1961년 9월 30일(법률 제732호) 제정된 이후 '82년 12월말 5차 개정이 있는지 10여년이 되었다.

이에 따라 그간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술혁신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첨단산업분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KS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중전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

완함에 있다.

### 〈주요개정내용〉

#### 1. 국가표준의 범위확대

- 법 제1조(목적)에 광공업 제품관련 서비스의 향상 및 생산기술혁신을 기한다는 내용이 추가됨.
- 법 제2조(정의)에 산업표준화 범위로서 광공업품의 기능, 운용방법, 활용과 관련되는 시험·분석·감정·측정방법등의 내용이 추가됨.

#### 2. 한국공업표준(규격)을 한국산업표준(규격)으로 명칭변경(법 제4조, 제10조)

#### 3. 규격의 제·개정·폐지시의 공고를 고시로 개정함(법 제9조).

#### 4. 이해관계자가 한국산업규격의 제정, 개정신청시 공인기관 검토의견서 첨부제도를 폐지하고 규격 제·개정 신청서와 규격안에 대한 설명서만 제출토록 함(규칙 제2조).

5. 공업진흥청장은 산업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청회를 개최토록 규정됨(법 제8조).
6. 규격 제·개정 신청이 있는 경우는 심의회에 회부하고 심의회는 회부된 신청을 지체없이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업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업진흥청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토록 규정됨(법 제6조).
7. 산업표준심의회 및 부회의 운영(영 제2조 내지 제20조).
  - 산업표준심의회는 공업진흥청장이 위촉하는 3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에 표준회의 및 부회를 둔다.
  - 표준회의는 위원장이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표준회의는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부회의 설치, 폐지, 부회 상호간의 기능조정 등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한다.
  - 부회는 심의회 각 전문분야별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표준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을 각 부회별로 배정한다.
  - 부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 산업표준의 제정, 개정, 확인, 폐지사항
    - 표시대상품목의 지정, 가공기술의 종목지정
    - 표시명령, 통일, 단순화명령에 관한 사항
    - 국제규격의 심의에 관한 사항
  - 부회장은 위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심의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심의토록 한다. 다만, 산업표준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위원회는 각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공업진흥청장이 위촉하는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부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부회는 이에 대한 가·부결정을 한다(부회와 전문위원회의 의결이 서로 다른 경우는 표준회의가 최종결정한다)
8. 미허가, 미승인 제품 및 가공기술에 대한 금지사항 구체화
  - 미허가 제품에 KS표시, 유사표시 및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표시행위금지(법 제11조, 제12조)
  - 미허가 제품의 판매, 진열, 보관, 운반행위금지(법 제11조, 제12조)
  - 미승인제품의 수입·판매 행위금지(법 제14조)
  - 표시명령에 위반한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진열, 보관, 운반금지(법 제15조)
9. KS허가 및 승인심사 제조개선 및 수수료 현실화
  - 심사기준 : 주요자재, 공정 및 제품의 품질관리실적 6월 → 3월로 단축
  - 심사결과 판정기준 변경
    - 평가결과 점수합계가 80점이상이고 가중치 2배의 10개항목에는 “C”가 없어야 한다.
  - 심사기관
    - KS허가심사 :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의 심사원 2인이 심사
    - KS승인심사 : 공업진흥청 직원 2인이 심사
  - 심사수수료
    - KS허가 : 신청료(50,000원), 심사수당 및 심사원여비, 제품시험비용등 부담
    - KS승인 : 신청료(50,000원), 심사원여비, 제품시험비용 부담

- 공장심사 면제범위 확대(요강 제19조)
  - 중소기업기술혁신상 수상공장
  - IECQ인증을 받은 공장
- KS허가 취소의 재허가 신청 금지기간 단축 : 1년 → 6개월(요강 제33조 2항)
- 10. 표시명령 및 통일, 단순화명령의 범위확대(법 제27조, 제28조)
  - 건축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품목 및 가공기술
- 11. KS허가 및 승인에 대한 지위승계 규정 신설 및 승계요건 명시
  - 공장의 전부를 양도, 양수, 합병 또는 상속 시(법 제17조)
- 12. 허가 또는 승인제품, 원자재, 기술적 생산조건에 대한 검사 제도개선
  - 특별검사(요강 제25조)
    -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정부기관, 소비자단체등의 이의신청 포함)
    - 생산상황보고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
    - 공장을 이전한 경우
    -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표준화능력평가기관에 의한 검사(법 제23조 및 규칙 제24조)
    - 규격 및 심사기준의 개정으로 품질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새로운 기술적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당경쟁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품질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경우
- 13. 유통과정의 표시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 소비자 또는 안전, 위생관련제품(법 제24조)
  - KS승인 품목(요강 제24조)
  -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요강 제24조)
- ※ KS협의회 품목은 협의회에서 소속회원업체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하고 협의회 공장 품목중 비회원업체에 대하여는 협회회의 지원을 받아 공업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협회회의 회원사 사후관리와 동시에 시판품조사를 할 수 있다(요강 제34조)
- 14. 표시제거 표시정지 또는 판매정지 기타 필요한 처분등의 사유 구체화
  - 공장검사 또는 시판품조사결과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법 제25조)
  - 승계사항 미신고, 규칙에서 정하는 보고 및 문서비치 미이행시(법 제17조2항 및 제20조)
  - 공장검사 및 능력평가기관의 검사에 필요한 시료 미제공시(법 제22조3항 및 제23조3항)
  - 품질관리담당자의 미지정(법 제37조)
- 15.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사유 구체화(법 제26조)
  - 취소사유
    - 공장검사 또는 시판품조사결과 규격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의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때
    -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등의 처분에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
  - 취소절차
    - 허가취소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 취소처분을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대한 청문도 공진청에서 실시함
- 16. 청문절차 규정 신설(법 제27조·시행령 제30조)
  - 법 제25조, 26조에 의해 처분시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청문계정 10일전까지 청문내용 통지)하고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

소 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청문절차 없이 처분가능토록 규정됨.

17. 행정처분의 기준변경 사항(요강 제33조)

- 검사결과 경결함 3개 있을 경우의 표시정지 규정과 중결함 3개이상 있을 경우 허가취소 규정 삭제
- 2년이내 가중처분사유 발생시 동일규격 품목별로 처분하던 것을 동일허가 구분별 품목으로 변경함.
- 개선명령 사유 추가
  - 시료무상제공거부, 허가증 및 표시판매개시, 허가증 변경사유 발생후 1개월이내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않을 때
  - 공장이전 후 1개월 이내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18. 사후관리 면제 범위확대 및 면제대상 포상의 명칭변경(요강 제28조)

- 중소기업 기술혁신상 수상공장 추가
- 우수 KS업체 대상을 산업표준화대상으로 품질관리대회시 대상은 품질경영혁신 대회시 품질경영상 수상공장으로 변경
- KS업체 협의회 소속회원업체에 대한 시판 품조사 및 표시품 생산상황보고에 제품시험 성적서 첨부 생략

19. 민간단체가 제정하는 단체표준에 대한 승인 규정 신설(법 제28조, 규칙 제27조)

- 규격이 없는 경우
- 규격이 있는 경우에도 단체표준이 규격수준을 상회하는 경우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에서 물자구입 및 시설공사시 단체표준준중(법 제32조)하고 KS표시품이 없을 시는 단체품질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함(법 제33조 단서)

※ 품질인증표시마크의 작도법이 요강 제38조와 관련하여 “별표 2”에 규정됨

20. 한국공업표준협회의 명칭변경 및 기능보강(법 제29조)

- 명 칭 : 한국표준협회로 변경
- 기 능
  - 규격의 발간, 보급, 조사, 연구, 지도, 교육, 계몽
  - 외국규격, 국제규격 기타 간행물의 수집, 보급
  - 국제품질시스템에 대한 조사, 연구, 인증, 교육
  - 기타 공진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21. 한국산업표준원 설립(법 제31조)

- 규격안의 연구개발
- 규격관련 정보의 조사, 분석, 보급

22. 권한의 위임, 위탁범위 확대(법 제38조)

- 농림수산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 국립공업기술원장, 지방공업기술원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위탁 가능토록 확대

2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실시(요강 제40조)

- 대표자 변경시
-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자가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신청시
- 표시정지, 판매정지, 시판품표시제거 처분을 받은 경우
- 품질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자는 매 3년 경과 시마다 보수교육(기사자격증소지자는 기사 보수 교육)

24. 품질관리담당자 자격기준 완화(요강 제41조)

- 품질관리기사 1·2급 자격, 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100시간이상 이수자
-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부서 또는 공업진흥청·공업기술원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자

25. 벌 칙(법 제39조)

- 종전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부과규정을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
  - 허가받지 아니한 제품에 KS표시 및 유사 표시를 한 자
  - 허가받지 아니한 제품에 KS표시 또는 유사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 진열, 보관, 운반 및 선전한 자
  -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자 또는 미승인제품의 판매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법 제15조에 의한 표시명령에 위반한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진열 및 보관을 한 자
  - 표시명령 위반제품에 대한 파기,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통일, 단순화명령을 위반한 자
  - 법 제25조, 제26조에 의한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허가 또는 승인취소 처분에 위반한 자

26. 법 칙(법 제40조)

- 종전의 50만원이하 벌금 부과규정을 500만원이하 벌금으로 개정
  - 공진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 표준화능력평가기관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27.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법 제43조)

- 부과사유
  -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 부과 및 징수방법
  - 공업진흥청장, 국립공업기술원장, 지방공업기술원장이 부과하는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국고세입으로 징수
  -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지방재정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지방세입으로 징수
  -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이의신청자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한 때에는 관할 법원 수입으로 처리함.

28. 각종보고 및 문서비치 사항등

- 지위승계신고(규칙 제12조)
  - 승계한 날로부터 1월이내 공업진흥청에 신고(승계사유서, 지위승계 증빙서류 사본 첨부)
- 허가증 변경 및 재교부 신청(규칙 제9조, 요강 제20조)
  - 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에 공업진흥청장에 신청(사유서, 허가증원본, 관계증빙서류 첨부)
- 처분의 공고(규칙 제26조)
  - 공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표시제거, 판매정지, 표시정지처분시, 공진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 취소시
- 생산개시보고(요강 제32조제2항)
  - 규격개정에 따라 표시품 생산시, 생산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공진청장에 보고

- 공장이전보고(요강 제32조제3항)
  - 이전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내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생산중단보고(규칙 제20조 3항·요강 제22조)
  - 생산중단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 생산중단일로부터 10일이내 허가 취득자는 시·도지사에게 승인취득자는 공진청청에게 보고
- 표시품 생산상황보고(규칙 제20조1항)
  - 다음년도 1월말까지 허가취득자는 시·도지사, 승인취득자는 공진청청에게 보고
- 허가 또는 승인취득자의 문서 비치 (규칙 제21조)
  1. 표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대장, 관리기록
  2. 검사방법 및 품질관리방법 기타 품질보증에 필요한 관리방법을 규정한 문서와 그

실시기록

- KS사후관리 결과보고(요강 제25조)
  - 시·도지사는 특별공장검사, 시판품조사·표시품생산상황보고 검토결과로 구분하여 그 실적을 반기별로 공진청청에게 보고
  - 공진청 표준국 각과에서는 매월별로 사후관리 실적을 작성 표준계획과에 통보하여야 함.
- 사후관리 카드 비치(요강 제43조): 공업진청청장(표준국 각과) 또는 시·도지사
- 규격개정에 따른 보고(요강 제32조 1항)
  - 허가 또는 승인 취득자는 규격이 개정된 때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격에 따라 표시품을 생산하고 생산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진청청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안**

광고 게재 안내

여기저기 쏟아지는 광고의 홍수속에 광고는 마케팅의 최전선으로 평가되며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국내 유일의 전기용품에 관련된 전문지로서 월간 『전기와안전』이 여러분 기업에 최대의 광고효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MONTHLY JOURNAL  
 月刊 電氣와安全  
 ELECTRIC SAFETY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9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연구개발부  
 TEL: (02) 579-3291~5  
 FAX: (02) 578-3640